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2014년 10월 pp.293~317
한국세무학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현걸* · 정재연**

<요 약>

추계과세(Estimated Income Taxation)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가 차선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기장을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실질이나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소득(the Personal Service Income)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인적용역 중 작가의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 필요경비가 없어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액으로 계산한 조세부담액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하여 현행 추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만 지적한 선행연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동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추계과세, 인적용역소득, 문턱효과, 기준경비율제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hinhg@konkuk.ac.kr, 010-5250-6214, 주저자

**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jjjung@kangwon.ac.kr, 010-3779-744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4년 8월 26일

1차수정일 2014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10월 25일

I. 서 론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¹⁾ 납세자로서 자신이 기장한 내용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²⁾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가 차선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법 및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법을 적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한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장(또는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하고 있다.

근거과세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기장사업자에 비해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불리하게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실질이나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의 범위로 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한 후 각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법 또는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수입금액의 구간별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제시하고, 그러한 조세부담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인적용역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중 작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다만, 연도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변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문 및 강사의 인적용역도 포함한다.³⁾ 본 연구가 작가라는 인적용역을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3) 작가의 세분류는 저술가이며 국세청의 산업분류 코드번호는 940100이다. 자문 및 강사의 세분류는 모두 기타자영업이며, 산업분류 코드번호는 각각 940600과 940903이다. 서적을 저술하거나 지속적으로 신문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수입금액을 다른 유형 사업의 수입금액에 비해 과세당국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입이 상당하며,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매출)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작가의 인적용역 수입금액은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작가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대부분 출판사나 신문사 등 사업자일 것이므로 작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인적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인적용역을 포함하여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가의 인적용역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채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 경비가 없어 가장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액으로 계산한 조세부담액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하여 현행 추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추계과세체도의 문제점만 지적한 선행연구와 근본적으로 차별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기준경비율체도의 문제점

이나 잡지에 컬럼 등을 기고하는 경우가 작가의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기업체 등에 인사조직이나 마케팅 관련 경영자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전략의 개발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자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강의나 강연을 하는 경우가 강사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작가, 자문 및 강사의 인적용역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행위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작가, 자문 및 강사의 인적용역소득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한다.

- 4)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란 일정단계까지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적다가 일정단계를 지나게 되면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턱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응능부담의 원칙 또는 조세의 공평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문턱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입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 기준금액(2,000만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득이하게 문턱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등은 문턱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등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동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 인적용역의 추계과세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면 정부의 세수가 다소 감소되기는 하겠지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만하며, 궁극적으로 징벌적 과세의 확대보다는 누락되는 세원의 포착에 초점을 두는 조세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를 개관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포함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한계점을 언급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추계과세와 관련된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장에서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 세무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⁵⁾

국중호(2002)는 장부기장한 사업소득에 근거한 기장신고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납세하는 무기장신고가 양립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장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방식의 제도가 기장신고납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무기장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신고납세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장세액공제와 과세추계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양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였다. 그는 추계과세 적용율이 낮아지면 과표양성화도 낮아지며, 과표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계과세 적용율을 높이면 조세저항에 부딪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장신고납세의 진작을 위해 기장세액공제 등의 성실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추계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형상 외(2003)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음성·탈루소득 추계과세를 위한 대안으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자 또는 사치향락적 소비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들은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자 가구의 탈루소득을 2000년 기준 약 60조원으로 추정하고, 골프세트·대형승용차·고가주택 등의 자산이 탈루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들은 음성·탈루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흡수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 이미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제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을 도입하

5)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하여 추계과세시 조세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이므로 조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에 대한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여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정재연과 신현걸(2003)은 기준경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절차를 보여줌으로써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세부담보다 커져야 하고,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부담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전제를 제시하고,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제시하였다.

박정우와 이대규(2004)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과세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현행 추계과세방법의 문제점으로 우선 기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근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무기장 추계과세가 기장과세보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간이과세제도의 운용이 근거과세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납세의식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실상 기준경비율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추계과세방법이 획일화 되어 있으며, 기준경비율법은 총수입금액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도 종전의 표준소득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보관의 유인도 없으므로 기장제도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기장확대를 위하여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고, 위장 간이과세자를 색출하여 실액과세의 훼손을 줄이며,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주요경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며, 기준경비율 제정절차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찬웅(2005)은 추계과세제도의 의의 및 개정에 따른 과세효과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국세청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일 수 있으나, 표준소득률의 수준에 따라 조세순응도 및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위배라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장신고와 표준소득률제도의 중간적인 과세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기적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태승(2006)은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를 개관하고 소득세 추계과세 실태를 검토한 후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금액을 축소시키고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일치시키며, 소득상한배율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경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다양하게 법령에 명문화해야 하며, 기장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장·추계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도 주장하였다. 또한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의 도입과 간편장부의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로서 강동휘(2012)는 추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정비하고, 추계신고 법령을 개선하며,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기장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시키며, 기준경비율 산정 기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합리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득상한배율제도를 폐지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개선방안만 제안하고 있을 뿐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한 추계납세제도가 얼마나 조세부담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금액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이러한 추계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관련 소득세제의 개정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Ⅲ. 우리나라 추계과세제도의 개관

1. 추계과세제도의 변천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에 도입되어 2001년까지 47년간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세가 1995년 귀속분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제도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방법으로 계속 활용되어 왔다.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장제도의 확립을 저해하고 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학계·시민단체 및 조세전문가들로부터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재연·신현걸, 2003).

이러한 표준소득률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에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많은 사업자가 오랫동안 표준소득률에 의존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온 현실을 무시한 논의에 불과할 뿐 실현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더라도 단기간에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과도기적 중간단계의 설정이 정책대안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었으며,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계산방법을 도입·시행하면서 무기장사업자를 점진적

으로 기장사업자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사업실상에 따라 스스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표준소득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국세청, 2001).

2. 추계과세의 신고 현황

국세청 통계자료⁶⁾에 기초하여 최근 5년간 추계과세자를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단순경비율 신고자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총결정세액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추계과세 신고 현황

(인원 : 천명, 금액 : 십억원)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		기준경비율신고		단순경비율신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총수입금액	3,584	649,392	420	36,561	1,107	41,412
	과세표준	2,990	64,665	291	4,435	1,107	9,264
	총결정세액	2,925	11,839	295	750	1,053	1,314
2009	총수입금액	3,571	669,595	461	38,872	892	35,514
	과세표준	2,848	66,667	311	4,774	892	12,391
	총결정세액	2,792	11,804	318	758	841	1,006
2010	총수입금액	3,785	752,289	450	40,616	933	38,312
	과세표준	3,021	75,259	304	5,026	933	8,551
	총결정세액	2,961	13,292	311	788	788	882
2011	총수입금액	3,957	826,428	452	41,254	942	36,711
	과세표준	3,170	84,109	452	7,857	942	13,876
	총결정세액	3,099	15,310	308	829	882	1,140
2012	총수입금액	4,353	848,926	469	41,200	985	36,508
	과세표준	3,531	93,668	468	8,228	985	9,326
	총결정세액	3,451	17,038	318	902	921	1,228

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통계. 본 논문 작성일 현재 2013년도 통계자료는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08년에 약 358만 명에서 2012년에는 435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총결정세액도 매년 증가하였다. 추계과세가 적용된 기준경비율신고자와 단순경비율신고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에 약 153만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42.6%를 차지하였는데, 2012년에는 약 145만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3.4%로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의 자료에 기초하여 연도별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연도	전체		기준경비율신고		단순경비율신고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2008	9.6%	1.8%	12.1%	2.0%	22.4%	3.2%
2009	10.0%	1.8%	12.3%	2.0%	34.9%	2.8%
2010	10.0%	1.8%	12.4%	1.9%	22.3%	2.3%
2011	10.2%	1.9%	19.0%	2.0%	37.8%	3.1%
2012	11.0%	2.0%	20.0%	2.0%	25.5%	3.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은 9.6%에서 11.0%의 범위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총수입금액 대비 총결정세액도 1.8%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신고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은 12.1%에서 12.4%의 범위 내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19%와 20%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의 총수입대비 총결정세액은 2010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단순경비율신고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이 매년 30% 내외로 증감이 반복되며,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도 매년 3% 내외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신고자에 비해 단순경비율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이 연도별로 0.4%p에서 1.4%p까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경비율신고자 및 단순경비율신고자가 부담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연도별 금액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산세 총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준경비율신고자의 가산세 총액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경비율신고자의 가산세 총액도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최근 5년간 가산세 총액은 144,608백만원인

반면,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최근 5년간 가산세 총액은 171,658백만원으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가산세 총액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기준경비율 신고자가 추계신고로 인해 부담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합계액은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가산세 합계액의 약 63.2%로서 대부분의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추계신고로 인해 부담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합계액은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가산세 합계액의 약 49.8%로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신고자의 총가산세 중 추계과세자가 부담한 가산세의 비중은 약 7.9%이다.

〈표 3〉 연도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체 신고자 총가산세	기준경비율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합계	신고불성실	무기장	합계	신고불성실	무기장
2008	719,942	20,323	7,741	6,812	33,928	15,685	2,619
2009	624,498	29,162	9,100	11,486	35,744	14,692	3,760
2010	800,622	31,925	7,923	7,647	29,838	12,551	2,626
2011	867,752	29,886	9,980	9,532	35,622	14,087	2,149
2012	972,913	33,312	12,659	8,476	36,526	14,591	2,789
합계	3,985,727	144,608	47,403	43,953	171,658	71,606	13,943

<표 3>에 기초할 때 최근 5년간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총결정세액 대비 추계과세자의 총결정세액의 비율은 약 13.9%인 점을 고려하면 추계과세자의 가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추계과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면 추계과세자의 가산세는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계과세자의 세법 준수정도가 기장과세자보다 낮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⁷⁾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

7) 업종별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의 수입금액이 다른데,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일정금액⁸⁾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추계소득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위 산식에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및 인건비를 말하며, 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만 공제한다.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추계소득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단순경비율 및 배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②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위 산식에서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3.0(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는 2.4)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을 계산한다.

한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추계과세표준 = $\text{소득금액} - \text{인적공제} - \text{특별소득공제}$

8)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 수입금액이 다른데,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다. 세액계산 및 가산세의 적용

추계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연도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중 작가, 자문 및 강사의 3가지 세세분류에 대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⁹⁾

귀속 연도	작가(940100)			자문(940600)			강사(940903)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본율	초과율		기본율	초과율	
2004	76.9	67.7	37.7	60.0	44.0	39.4	52.9	34.3	34.3
2005	74.6	64.4	39.6	60.0	44.0	39.4	52.9	34.3	34.3
2006	72.1	60.8	37.6	60.0	44.0	37.4	52.9	34.3	34.3
2007	70.7	58.8	37.6	64.0	49.6	35.5	55.3	37.6	34.3
2008	69.2	56.9	37.6	65.8	52.2	35.5	59.7	43.6	34.3
2009	67.7	54.8	33.8	64.1	49.7	33.7	61.7	46.4	29.2
2010	66.1	52.5	33.8	64.1	49.7	33.7	61.7	46.4	29.2
2011	64.4	50.2	32.1	64.1	49.7	32.0	61.7	46.4	29.2
2012	62.6	47.6	32.1	62.3	47.2	30.4	61.7	46.4	29.2
2013	60.7	45.0	28.9	60.4	44.6	27.4	61.7	46.4	29.2

수입금액에 곱하는 단순(기준)경비율이 낮을수록 소득금액은 증가한다. <표 4>의 작가의 인적용역의 연도별 단순경비율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자문의 인적용역

9)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되는데,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한편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일반율에 0.4를 가산한다. 그러나 인적용역(940100~940919)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 연도별 단순경비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소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여 2013년 단순경비율 수준은 2004년과 유사하다. 반면에 강사의 인적용역의 연도별 단순경비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2013년 단순경비율이 2004년보다 더 높다. 작가, 자문 및 강사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3가지 용역에 대한 비용의 발생 정도가 유의하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 과거 10년 동안 단순경비율이 작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자문의 경우에는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 강사의 경우에는 상승하였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작가, 자문 및 강사의 인적용역의 기준경비율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두 가지 경비율의 연도별 증감 행태가 상이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표 4>에서 3가지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기본율) 대비 기준경비율은 작가의 경우 약 48%에서 54%의 범위 내이고, 자문의 경우 약 45%에서 66%의 범위 내이며, 강사의 경우 약 47%에서 65%의 범위 내이다. 이와 같이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결정되는 이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를 전액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이외의 비용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계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추계신고자는 아니지만 가장한 내역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과세소득자의 손익계산서에 기초하여 전체 비용 중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단순경비율 대비 기준경비율의 수준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식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text{단순경비율 적용시 추계소득금액} = R - R \times \text{Smpr} \quad \text{식(1)}$$

$$\text{기준경비율 적용시 추계소득금액} = R - \text{Exp} - R \times \text{Stdtr} \quad \text{식(2)}$$

여기서, R : 수입금액, Exp : 주요경비, Smpr : 단순경비율, Stdtr : 기준경비율

위의 식(1)과 식(2)를 일치시키는 Exp를 구하면,

$$\text{Exp} = R \times (\text{Smpr} - \text{Stdtr}), \text{ 따라서}$$

$$\text{Smpr} - \text{Stdtr} = \text{Exp} / R$$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 비율과 동일하다. <표 4>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연도별로 작가의 경우 약 30%에서 39%이고, 자문의 경우 약 20%에서 33% 정도이며, 강사의 경우 약 19%에서 33% 정도이다.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시 외부조정자와 자기조정자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의 내역을 국세통계에서 확인하였으며, 그 내역을 <표 5>에 요약하였다.

〈표 5〉 수입금액 대비 총비용 및 매입비용 등의 비중

(금액 단위 : 십억원)

과 목	외부조정자	자기조정자
매출액(A)	393,630	29,038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합계(B)	290,544	18,141
B / A	73.8%	62.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조정자와 자기조정자의 매출액 대비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의 합계 비율은 각각 73.8%와 62.5%이다. 추계과세자의 비용 구성이 기장과세자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두 유형의 과세자의 비용의 유형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Smpr-StdR) < Exp/R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과세자가 주요 경비의 증명서류를 누락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과세자보다 비용 공제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과세자보다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가, 자문 및 강사와 같은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성격상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또는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가 발생하기 어렵다.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화의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므로 사업장 임차에 따른 임차료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소득금액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IV.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 계산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시 세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가정을 설정한다.

<기본가정>

- 거주자인 갑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이 있다.
- 근로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4,000,000원이다.
- 갑은 인적용역소득(작가 : 940100)이 있으며,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한다.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인적용역소득 수입금액을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까지 100만원 단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물레이션을 실시한다.
-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와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를 구분하기 위한 가정이다.

거주자인 갑의 인적용역소득(작가)을 추계과세할 경우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산출과정이 달라진다.

<표 6> 수입금액별 적용 경비율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구 분	경비율	가산세
수입금액 24,000,000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미적용
수입금액 24,000,000원 이상 수입금액 48,000,000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미적용
수입금액 48,000,000원 이상 수입금액 75,000,000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적 용
수입금액 75,000,000원 이상	기준경비율×1/2 적용	적 용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용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낮은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가산세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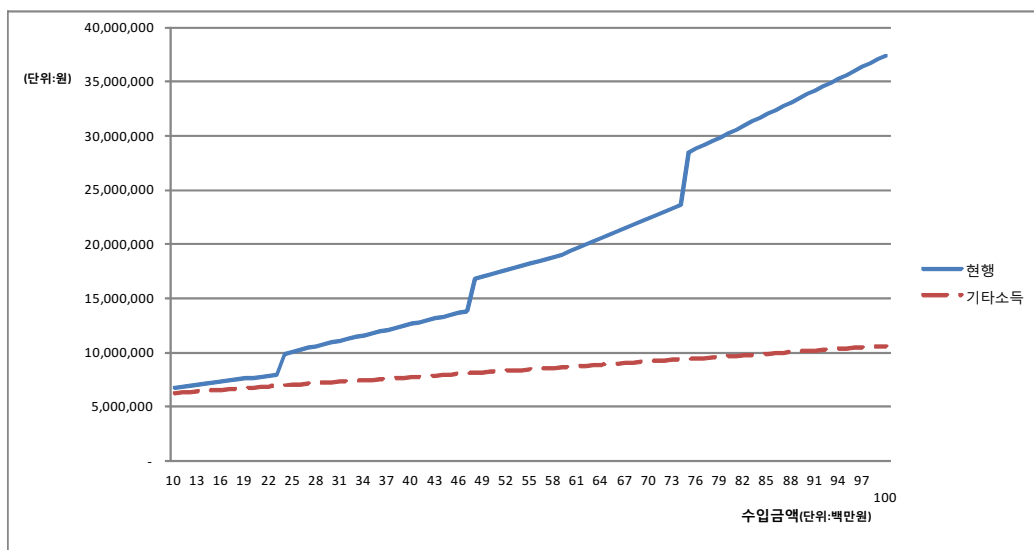
거주자 갑의 인적용역 수입금액의 범위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고 범위 내의 수입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거주자 갑이 얼마나 조세를 부담하는지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요약하였다.

〈표 7〉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부담액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적용	추 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조세 부담률
10,000,000	3,930,000		3,930,000	49,930,000	6,763,200		6,763,200	9.43%
11,000,000	4,323,000		4,323,000	50,323,000	6,857,520		6,857,520	9.43%
12,000,000	4,716,000		4,716,000	50,716,000	6,951,840		6,951,840	9.43%
중 략								
21,000,000	8,253,000		8,253,000	54,253,000	7,800,720		7,800,720	9.43%
22,000,000	8,646,000		8,646,000	54,646,000	7,895,040		7,895,040	9.43%
23,000,000	9,039,000		9,039,000	55,039,000	7,989,360		7,989,360	9.43%
24,000,000	22,636,800	17,064,000	17,064,000	63,064,000	9,915,360		9,915,360	17.06%
25,000,000	23,580,000	17,775,000	17,775,000	63,775,000	10,086,000		10,086,000	17.06%
26,000,000	24,523,200	18,486,000	18,486,000	64,486,000	10,256,640		10,256,640	17.06%
27,000,000	25,466,400	19,197,000	19,197,000	65,197,000	10,427,280		10,427,280	17.06%
28,000,000	26,409,600	19,908,000	19,908,000	65,908,000	10,597,920		10,597,920	17.06%
29,000,000	27,352,800	20,619,000	20,619,000	66,619,000	10,768,560		10,768,560	17.06%
41,000,000	38,671,200	29,151,000	29,151,000	75,151,000	12,816,240		12,816,240	17.06%
중 략								
42,000,000	39,614,400	29,862,000	29,862,000	75,862,000	12,986,880		12,986,880	17.06%
43,000,000	40,557,600	30,573,000	30,573,000	76,573,000	13,157,520		13,157,520	17.06%
44,000,000	41,500,800	31,284,000	31,284,000	77,284,000	13,328,160		13,328,160	17.06%
45,000,000	42,444,000	31,995,000	31,995,000	77,995,000	13,498,800		13,498,800	17.06%
46,000,000	43,387,200	32,706,000	32,706,000	78,706,000	13,669,440		13,669,440	17.06%
47,000,000	44,330,400	33,417,000	33,417,000	79,417,000	13,840,080		13,840,080	17.06%
48,000,000	45,273,600	34,128,000	34,128,000	80,128,000	14,010,720	2,802,144	16,812,864	22.90%
49,000,000	46,216,800	34,839,000	34,839,000	80,839,000	14,181,360	2,836,272	17,017,632	22.85%
50,000,000	47,160,000	35,550,000	35,550,000	81,550,000	14,352,000	2,870,400	17,222,400	22.80%
51,000,000	48,103,200	36,261,000	36,261,000	82,261,000	14,522,640	2,904,528	17,427,168	22.76%
52,000,000	49,046,400	36,972,000	36,972,000	82,972,000	14,693,280	2,938,656	17,631,936	22.72%
53,000,000	49,989,600	37,683,000	37,683,000	83,683,000	14,863,920	2,972,784	17,836,704	22.67%
54,000,000	50,932,800	38,394,000	38,394,000	84,394,000	15,034,560	3,006,912	18,041,472	22.63%
55,000,000	51,876,000	39,105,000	39,105,000	85,105,000	15,205,200	3,041,040	18,246,240	22.59%
중 략								
67,000,000	63,194,400	47,637,000	47,637,000	93,637,000	17,872,950	3,574,590	21,447,540	23.32%
68,000,000	64,137,600	48,348,000	48,348,000	94,348,000	18,121,800	3,624,360	21,746,160	23.42%
69,000,000	65,080,800	49,059,000	49,059,000	95,059,000	18,370,650	3,674,130	22,044,780	23.51%
70,000,000	66,024,000	49,770,000	49,770,000	95,770,000	18,619,500	3,723,900	22,343,400	23.60%
71,000,000	66,967,200	50,481,000	50,481,000	96,481,000	18,868,350	3,773,670	22,642,020	23.69%
72,000,000	67,910,400	51,192,000	51,192,000	97,192,000	19,117,200	3,823,440	22,940,640	23.78%
73,000,000	68,853,600	51,903,000	51,903,000	97,903,000	19,366,050	3,873,210	23,239,260	23.86%
74,000,000	69,796,800	52,614,000	52,614,000	98,614,000	19,614,900	3,922,980	23,537,880	23.94%
75,000,000	88,425,000	64,162,500	64,162,500	110,162,500	23,656,875	4,731,375	28,388,250	30.09%
76,000,000	89,604,000	65,018,000	65,018,000	111,018,000	23,956,300	4,791,260	28,747,560	30.17%
77,000,000	90,783,000	65,873,500	65,873,500	111,873,500	24,255,725	4,851,145	29,106,870	30.24%
78,000,000	91,962,000	66,729,000	66,729,000	112,729,000	24,555,150	4,911,030	29,466,180	30.32%
79,000,000	93,141,000	67,584,500	67,584,500	113,584,500	24,854,575	4,970,915	29,825,490	30.39%
80,000,000	94,320,000	68,440,000	68,440,000	114,440,000	25,154,000	5,030,800	30,184,800	30.46%
81,000,000	95,499,000	69,295,500	69,295,500	115,295,500	25,453,425	5,090,685	30,544,110	30.52%
97,000,000	114,363,000	82,983,500	82,983,500	128,983,500	30,244,225	6,048,845	36,293,070	31.42%
98,000,000	115,542,000	83,839,000	83,839,000	129,839,000	30,543,650	6,108,730	36,652,380	31.46%
99,000,000	116,721,000	84,694,500	84,694,500	130,694,500	30,843,075	6,168,615	37,011,690	31.51%
100,000,000	117,900,000	85,550,000	85,550,000	131,550,000	31,142,500	6,228,500	37,371,000	31.55%

<표 7>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부담률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2,400만원, 4,800만원, 그리고 7,5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어 소득세 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해 낮아지므로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 7>의 소득세부담액을 <그림 1>에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1> 인적용역소득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구간별로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는 반면,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 그리고 7,500만원이 되는 구간에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추가되면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 지역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의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결국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조세공과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2. 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기준경비율의 1/2 적용에 따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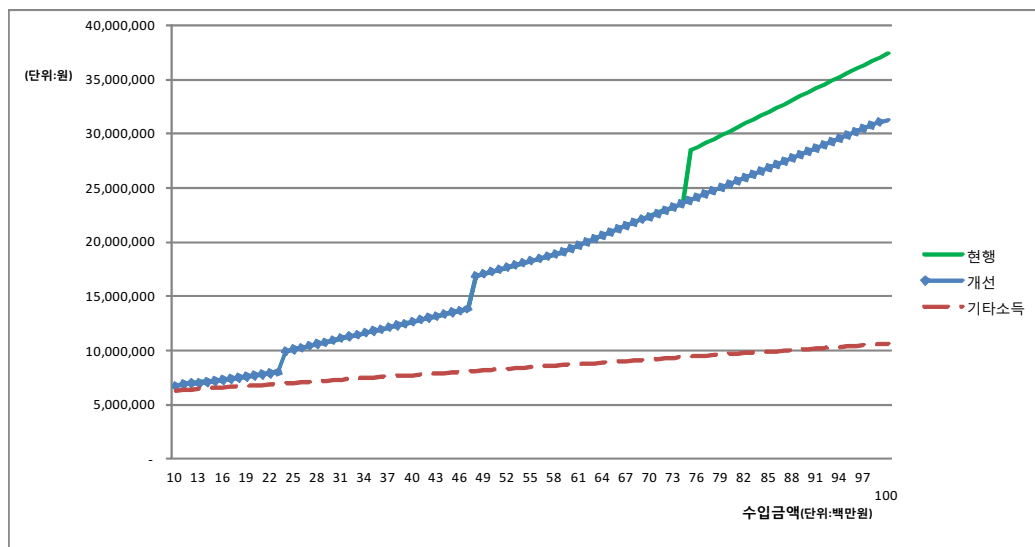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2011년 1월 1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을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의 전액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박태승, 2006), 많은 사업자가 원천적으로 수입금액(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1/2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자는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서 누락 없이 대부분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이므로 그들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금액 탈루가 어려운 인적용역소득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 10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2>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규정을 폐지할 경우 소득세 부담액



나. 가산세 적용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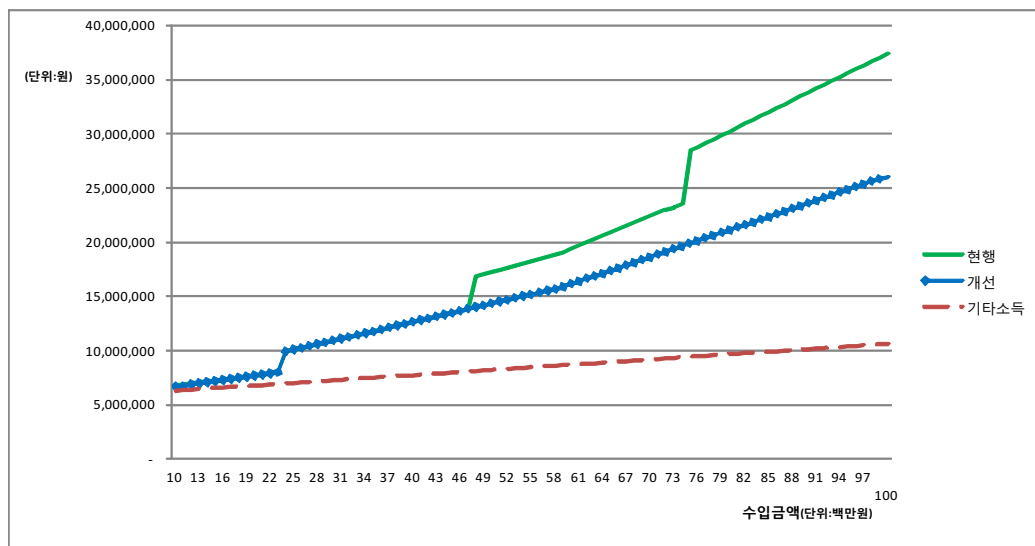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를 점진적으로 기장사업자로 흡수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제도의 핵심은 주요경비(임차료, 매입비용 및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업종별로 정해 놓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자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재고자산 등의 매입비용 및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주요경비의 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임차료, 매입비용 및 인건비 이외의 비용은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 증명서류에 의한 기장을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류에 의한 발생 경비만을 인정하며, 이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매우 낮은 기준경비율과 높은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지적 재산, 지적 노력 등에 대하여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근본적으로 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의적인 과세이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등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를 하되, 무기장 가산세(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준경비율을 100%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액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으며, 수입금액 4,800만원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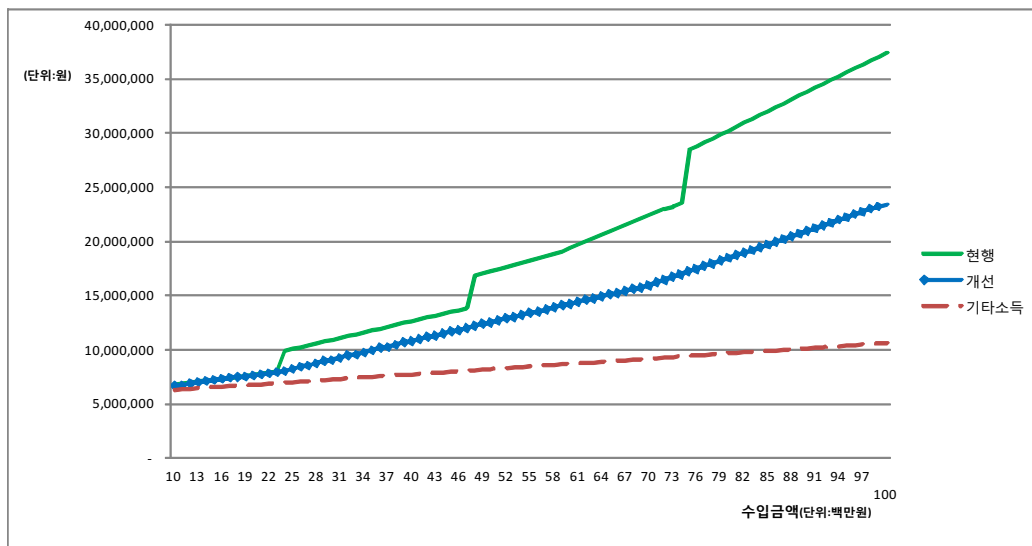


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의 차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940100)의 단순경비율은 60.7%(초과율 : 45%)인데 반하여 기준경비율은 28.9%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가 되는 순간 추계소득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초과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에 비해 기준경비율이 대폭 낮은 것은 주요경비율을 차감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무겁게 지움으로써 장부 기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장을 하고 싶어도 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책적인 의도가 질적하게 반영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수입금액 2,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다음 <그림 4>와 같이 수입금액 2,400만원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4>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액



라. 다른 용역소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하여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작가 이외의 다른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작가와 유사한 추계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은 주요 용역소득의 업종과 경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주요 용역소득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630403	도선사	60.2		34.7
702002	부동산감정업	58.2		29.3
723000	자료처리업	65.7		26.4
724000	온라인정보제공업	70.9		32.4
730000	연구및개발업	78.2		29.1
741101	변호사	44.6		17.7
741104	변리사	60.7		19.8
741106	공증인	53.8		16.7
741107	법무사	58.3		18.1
741108	집행관	51.5		27.3
741109	기타법무서비스	64.3		22.5
741110	공인노무사	64.3		22.5
741201	세무사(세무조정, 고문료)	58.2		23.0
741202	공인회계사(회계감사, 고문료)	58.2		23.0
741203	세무사(기장대리)	72.9		23.0
741204	공인회계사(기장대리)	72.9		23.0
741400	사업경영및관리자문	70.3		30.1
741401	경영지도사	73.2		35.2
741402	위탁교육훈련서비스	75.9		31.7
742105	건축사	73.6		27.5
742106	기술사	77.4		30.2
742202	기술지도사	80.2		28.8
749901	속기사	74.3		24.6
749902	번역및통역	77.5		34.6
749904	손해사정인	65.7		25.8
749906	관세사	72.1		24.8

〈표 8〉 주요 용역소득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속)

업종코드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749939	기타사업서비스	77.1		25.8
930921	시험문제출제, 채점	73.0		23.2
940100	작가	60.7	45.0	28.9
940200	화가및관련예술가	72.3	61.2	23.5
940301	작곡가	67.4	54.4	30.5
940302	배우등	46.7	25.4	25.1
940303	모델	57.9	41.1	25.1
940304	가수	54.6	36.4	25.4
940305	성악가등	66.8	53.5	28.3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60.4	44.6	27.4
940903	재단사및학원강사	61.7	46.4	29.2
940904	직업운동가	65.8	52.1	35.7

<표 8>의 업종 중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대부분 타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수행할 것이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은 없더라도 임차료와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던 작가 및 자문, 강사 등의 인적용역뿐만 아니라 시험문제 출제,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타인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배우나 가수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니저 등 타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건비는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적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의 발생 특성이 매우 다르고 수입금액의 투명성 정도도 상이할 것이므로 수입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인적용역 중 작가의 인적용역을 선택하여 수입금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의 범위로 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한 후 각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법 또는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수입금액의 구간별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제시하고, 그러한 조세부담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작가의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도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지 않고 당초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7,5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타인의 고용이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며, 그러한 용역은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인 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기장을 하고 싶어도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에 대한 기장 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기장하면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경비율 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매입비용이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을 고용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기 때문에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적용역 사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이 명확하게 노출되고 비용에 대한 기장을 하고 싶어도 기장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을 파악하여 수입금액의 구간이 변동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신고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또 다른 불공평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종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정 인적용역의 추계과세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면 정부의 세수가 다소 감소되기는 하겠지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만하며, 궁극적으로 징벌적 과세의 확대보다는 누락되는 세원의 포착에 초점을 두는 조세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턱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고찰, 현행법상 문턱효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다루지 못하였다. 현행세법상 문턱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동휘. 2012.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국세청. 2001.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 국세청. [http : //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중호. 2002. 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양성화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 연구 제19권 제1호 : 23 - 43.
- 김형상 · 장지인 · 이양현. 2003. 음성 · 탈루소득 양성화를 위한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 방안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 291 - 322.
- 박정우, 이대규. 2004.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 689 - 720.
- 박찬웅. 2005.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155 - 188.
- 박태승. 2006.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4호 : 109 - 131.
- 정재연 · 신현걸. 2003. 기준경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0권 제2호 : 7 - 3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stimated Income Taxation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Hyun Geol Shin* · Jae Yeon Jeong**

〈Abstract〉

Estimated income taxation is a method used to estimate taxation standards as an alternative for a taxation authority or taxpayer in the event that the taxation standards are not determined by accounting books or supporting docu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ocumentary Tax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bou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cal estimated income taxation method unilaterally to all business owners who do not record accounting book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actual business state or circumstances of the taxpayers, as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happen in the process of estimating income amount focusing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which is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and suggested the methods to improve the problems.

Specif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imulation with the service of the writers among the personal service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jumping effect that tax burden rapidly increases in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according to income size : a section to which the standard expense rate is applied ; a section to which additional tax is applied ; and a section to which 1/2 is multiplied by the standard expense rate.

For most businessmen who provide personal services, few incurred major expenses such as purchase of inventories, rent, and labor costs, as they provide their own service. In addition, as most of their services are intellectual services, there are no explicitly required expenses, which is impossible to do bookkeeping. Compared to other businessmen in other business types, their income tends to be disclosed explicitly. In consideration of such characteristics of personal service income, if standard expense rate is applied only to the income amount exceeding the range of income to which simple expense rate is applied, if the additional tax for non-bookkeeping is not charged, and if the method to which 1/2 is multiplied by the standard expense rate is not used, the jumping effect of rapidly increasing tax burden can be removed from the three sections.

The previous studies on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 without any specific ground.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simulation data of tax burden calculated in amount. In addition,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that the previous studies had not mention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a specific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if Korea continues to apply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Key words〉 Estimated Income Taxation, Personal Service Income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